



최승현

노무법인 삶 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고령화로 보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한계

올해 최악의 산재참사는 6월에 발생한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다. 지금까지는 위험의 외주화(원·하청)의 문제가 산재 사망의 문제, 안전보건 양극화의 문제로 대두됐지만, 이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뿐 아니라 위험의 이주화도 심각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또한 원하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고용형태가 불러오는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방식인 ‘위험의 외주화’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더욱 크게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6년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을 1로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5.1에 해당했다. 그런데 2016년은 8.5가 된다.¹⁾ 10년 사이에 60%가량 더 위험해진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커진 것이다. 2016년 사고사망자 969명 중 5인

미만이 301명으로 31%인데, 2023년은 812명 중 278명으로 34%를 차지했다. 50인 미만으로 치면 637명으로 78%나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는 것이다.

위험의 고령화·이주화

위험의 외주화뿐 아니라 고령화, 이주화 등의 문제도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으며, 현재 법령으로도 의무로 규율된 것이 별로 없다.

2006년, 2016년, 2023년 산재사고 사망자에 대한 연령별 통계²⁾를 보면 60세 이상의 비율이 15%, 32%, 46%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50대 이상은 2023년 산재사고 사망자의 76%를 차지한다. 고령자의 안전보건의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환기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한인임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 양극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일과건강웹진, 2016년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 통계 부분 인용. (2006년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 국가통계포털 산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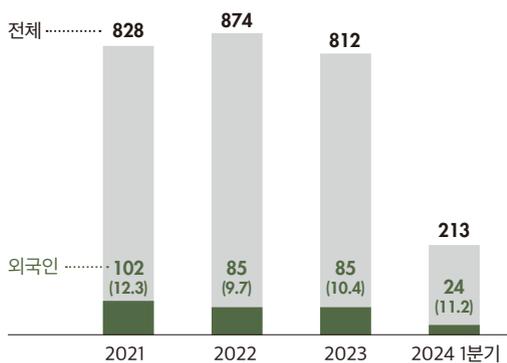
2) 국가통계포털, 안전보건공단 국가승인통계 가공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한계

외국인노동자의 안전보건 현황도 심각하다. 외국인노동자와 국내로 이주한 이주노동자는 점차 늘어 전체 취업자의 3% 정도를 차지하지만, 산재사고 사망자 중에서는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고가 있었어도 제대로 주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령으로 의무규율 계획을 세우면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아리셀 참사로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환기가 일어나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일부 직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제대로 된 안전보건체계에 들어 있지 않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의로 일하고 있지만 스스로 안전과 보건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외국인 사고 사망자수 (단위: 명, %)



자료 : 고용노동부

정부지원·노동자 참여 등 다각적 노력 필요

정부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서 안전보건 양극화를 극복하려고 한다. 대기업이 하청기업과 함께 안전보건체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을 외주화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위험한 업무에 대한 도급을 제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을 개정해서 위험 업무의 도급금지 범위를 넓히고, 도급승인 범위를 확대한다면 위험의 외주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에는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 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06년, 2008년, 2020년 노사정 합의했다. 하지만 계속 지켜지지 않았고, 2023년은 200억 원으로 0.21%만 집행이 됐다. 약 3%면 3,000억 원인데, 이것은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면 중대재해는 줄어들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를 설립하고 활성화하고,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노동자 스스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 안전대표제 같은 제도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건 양극화는 하청,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한 곳으로 흐른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모두의 노력과 모색을 바란다. 🙏